

1. 개정이유

법령에서 위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전 자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등을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영업인가(등록) 전 매매계약 기준 마련(안 제4조의2 신설)

- 취득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매매계약
등을 체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부동산투자회사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
일부개정예규안

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영업인가 등 전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 체결)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은 취득하려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)의 감정평가를 거친 것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영업인가 등 전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 체결)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은 취득하려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)의 감정평가를 거친 것을 말한다.